#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620

제출연월일: 2017. 09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○ 법제처의 "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"에 따라 현행 「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중 상위법령 위반 및 불일치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 조항 개정(안 제2조)
- 나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함(안 제8조)
- 다.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삭제(안 제8조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
  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제4조의2
-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- 7. 입법예고 결과
  - 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7년 9월 5일 ~ 9월 14일(10일간)
  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덧붙임

나. 규제개혁관련 협의 : 해당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공정경제과

#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2"를 "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의 별표 중"을 "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별표 중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10명"을 "9명"으로, "구성한다"를 "하고,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희망경제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희망경제과장 임 근 혁
	팀장 직위·성명	지역공동체팀장 강 환 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박 대 환 (790-564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정의)
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"준대규모점포"란 <u>「유통산업발전</u>	3 [유통산업발전법]
법」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	제2조제4호
말한다.	
4. "대형유통기업"이란 <u>「유통산업발</u>	4 <u> </u>
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의 별표중	법」 제2조제3호 별표 중
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 및 쇼핑센	
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	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· 운	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
영)① (생략)	영)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	② <u>9명</u>
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	<u>하고</u> , 위촉직의 경우 특
	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
	도록 하여야 한다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, 시	<u>〈삭 제〉</u>
장은 혐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	
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	
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	

### 【관계법령 발췌서】

#### 유통산업발전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3.3.23., 2015.2.3.〉

- 1. "유통산업"이란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(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) 및 공산품의 도매·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·배송·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·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2. "매장"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.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3. "대규모점포"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  - 가.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
  - 나.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
  - 다.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
- 4. "준대규모점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 직영하는 점포
  - 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
  - 다.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

###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[시행 2016.7.27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9호, 2016.7.27., 일부개정]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3.7.22.〉